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나2024288 판결 [선급금보증금 지급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나202428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6. 27 선고 2012가합349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김포시

피고, 항소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4. 12. 16.

판결 선고2015. 2. 3.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6. 27. 선고 2012가합34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8,867,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736,251,86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0.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민정석

판사최봉희